약사법 47조2

**제47조의2(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)**① 의약품공급자등은 [보건복지부령](javascript:;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 [보건복지부령](javascript:;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,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21. 7. 20., 2023. 4. 18.>

②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(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 [보건복지부령](javascript:;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. <신설 2023. 4. 18.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 [인정하는](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7283&chrClsCd=010202&urlMode=lsInfoP&efYd=20250408&ancYnChk=0#AJAX) 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,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약품공급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 <개정 2021. 7. 20., 2023. 4. 18.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등에 대하여 [보건복지부령](javascript:;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 <신설 2021. 7. 20., 2023. 4. 18.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 <신설 2021. 7. 20., 2023. 4. 18.>